

충남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한문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시행하는 경전독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수강한 과목 중에서 응시생이 선택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②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으로 한다.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합격기준은 전공시험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불합격된 시험에서는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상기 제3조의 경전독해시험으로 학위청구자의 외국어 능력시험을 대신하고 외국어시험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박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1학기 이전에 예비 발표를 한다.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박사학위과정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으로 환산하여 10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일을 포함하여 최근 10개 학기의 실적만 인정한다.

제8조(예외)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②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현재의 학과 기준과 동일한 경우 이전 입학자부터 적용 한다)

[별표 2]

학술지게재 점수 환산 방법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80%	- 1인 100%
- 학진등재 국내학술지 100%	- 2인 70%
- 학진등채후보 국내학술지 80%	- 3인 50%
	- 4인이상 30%